

## 프랑스어 사용관련법(“투봉법”)의 시행, 회고와 전망\*

김진수

(서경대학교 유럽어학부)

### 1. 머리말

사회언어학의 연구 대상인 언어정책은 하나 또는 다수의 대상언어를 언어사용 공동체의 요구에 가장 부합하도록 취하는 일련의 조치들이다. 사회언어학자 루이 장 칼베 Calvet는 언어정책이란 “언어와 사회, 다시 말해 언어와 주민생활 사이의 상관관계에서 수행되는 일련의 선택”이라고 했다. 이 선택은 언어의 지위에 관계되거나 코퍼스corpus라고 불리는 언어 내부구조에 관계된다.<sup>1)</sup> 프랑스의 경우 언어정책의 전 분야에 걸쳐 국가가 체계적으

\* 이 논문은 2008년 12월 12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한국불어불문학회 2008년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1) Calvet L. J. 1996: 3

주 제 어: 사회언어학, 언어정책, 언어관련 입법, 투봉법, 프랑스어권  
sociolinguistique, politique linguistique, législation linguistique, loi  
Toubon, francophonie

로 개입하고 있으며 이것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입법을 통한 언어정책의 수행이다.

근대 국가의 성립 이후 프랑스의 문화정책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책으로 특징지어진다. 절대 왕정에서 비롯된 이 노선은 국가가 주도적 입장에서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조직한다. 언어정책을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 프랑스는 이 같은 중앙 집권적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모든 공문서에서 프랑스어 사용을 의무화한 1539년 빌레르 코트레 Villers-Cotterêts 칙령에서 프랑스어의 공적 사용을 다시 의무화한 공화국 2년 열월(Thermidor) 2일(1794년 7월 2일) 법령을 거쳐 1994년 투봉법에 이르기까지 프랑스어 수호와 확산을 위한 노력은 여러 법률과 제도를 통해 구체화되어 왔다.

지난 1994년에 제정된 “투봉법”(loi Toubon)<sup>2)</sup>으로 불리는 프랑스어 사용 관련법이 제정된 지 어느새 15년이 흘렀다. 언어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 그것도 실제적 필요 이상으로 개입한다는 프랑스의 전통은 이미 잘 알려진 바이긴 하지만, 언어의 국가 통제라는 무리수를 두면서 제정된 이 법은 프랑스어의 수호라는 원래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 학계의 평은 대체로 호의적이었으며 프랑스 관련 논문집 외에 『한글』, 『교육 한글』, 『국어생활』 등에도 소개된 것을 보면 한글 관련 단체들의 호의적 평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하지만 프랑스 국내에서 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다룬 자료는 찾기 어렵고, 균형 있는 시각을 찾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투봉법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 프랑스 언어정책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2) 1994년 프랑스어 사용관련법은 발의한 당시 문화부 장관 자크 투봉 Jacques Toubon의 이름을 따와서 “투봉법”으로 불리고 있다. Saint Robert, M. J. 2000: 85-89.

## 2. 프랑스어 사용관련법의 제정

프랑스의 언어정책은 프랑스어 사용관련법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 역할은 프랑스언어총국(DGLFLF)<sup>3)</sup>이 맡고 있다. 법률을 통해 언어사용법을 강제했다는 의미에서 최초의 프랑스어 사용법은 1975년에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1976년 1월 4일자 관보에 공포되었다. 이 법의 별칭인 바-로리올법은, 1975년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두 국회의원(Bas, Lauriol)의 이름에서 따왔다.<sup>4)</sup> 최초의 실무 기구인 프랑스어 총괄사무국<sup>5)</sup>은 1984년 2월 9일자 법령으로 설치되었고, 1989년 6월 2일자 법령에 의해 프랑스어총괄국(DGLF)이 되었다. 프랑스어의 수호와 보급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연구하고, 대외 문화·기술 협력 분야에서 유관 기관과 연대하며, 프랑스어의 수호와 보급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촉진하고 권장하는 임무의 프랑스어 고등위원회<sup>6)</sup>가 활동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자문기구였다. 1966년 고등위원회 활동은 처음으로 언어정책을 문법전문가들의 활동범주

3) 프랑스 언어총국(La délégation générale à la langue française et aux langues de France, DGLFLF)은 문화부 소속 기관이지만 여러 부처사이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언어 정책 수행기관이다. 지난 1989년 프랑스어 총괄실(Délégation générale à la langue française, DGLF)로 설립되었지만 2001년 지방어 문제를 고려해, 명칭이 변경되었다. 프랑스 언어총국은 현재 투봉법의 준수 여부를 총괄하고 있다. 이민자의 프랑스어 교육 프로그램을 주관하며 전문용어 및 신조어위원회, 아카데미 프랑세즈와 함께 신조어 목록을 작성하고, 미디어와 공연에서 지역 언어 사용도 지원한다. 프랑스어 고등평의회(Conseil supérieur de la langue française)의 사무처 역할도 맡고 있다.  
<http://www.culture.gouv.fr/culture/dglf/>

4) Bogaards, P. 2008: 161-165.

5) Commissariat général à la langue française

6) Haut comité pour la défense et l'expansion de la langue française “프랑스어의 수호와 확산을 위한 적절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문화 기술 분야에서의 유능한 사(私)기관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며, 이를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966년 3월 31일 시행령 66-203 제1조, *Journal officiel* du 7 avril 1966. 1966년에 설립된 ‘프랑스어의 수호와 확산을 위한 고등위원회’가 1973년 2월 24일자 법령에 의해 ‘프랑스어 고등위원회’로 개칭.

를 벗어나 국제적인 차원에서 다루게 했다. 프랑스 국내외에서 프랑스어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꾸준한 프랑스어의 사용이 주목적이 되고 언어순화는 부차적인 것이 된다.<sup>7)</sup> 1972년 1월 7일자 법령에 의해 설치된, 프랑스어 다양화를 위한 부처별 전문용어 위원회는 그 임무가 전문용어·신조어의 제안과 보급이었다.

프랑스는 1992년에 체결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승인하기 위한 헌법 개정 당시 조약의 승인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공화국의 언어는 프랑스어이다”라는 조항을 제2조에 신설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1994년 프랑스어 사용관련법<sup>8)</sup>을 제정하게 되었다.

## 2.1. 제5공화국에서의 프랑스어 보호

드골 대통령 집권기인 1966년 “프랑스어 수호 및 확산을 위한 고등위원회”<sup>9)</sup>의 창설은 5공화국에서 이 분야에 대한 첫 번째 공권력의 개입이었다.<sup>10)</sup> 포피두 대통령은 1972년 중앙정부 차원의 전문용어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에 의해 승인된 신조어의 사용을 의무화했다. 1975년 의회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프랑스어 사용을 강제하는 프랑스어 사용관련법(1975년 12월 31일)을 의원입법으로 제정했다. 이 법은 바로리올법으로 불리며 다음과 같은 경우 프랑스어 사용을 강제하고 있다.<sup>11)</sup>

7) Saint Robert, M. J. 2000: 4

8) La loi relative à l'emploi de la langue française

9) Haut Comité pour la défense et l'expansion de la langue française

10) Sverker Bengtsson이 프랑스어 관련 공·사 기관들의 활동을 분석한 『프랑스어의 조직적 수호 *Defense organisée de la langue française*』라는 1968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이미 1937년부터 프랑스어의 수정(修正)과 순수함 유지를 위한 노력은 본격적으로 경주되었다고 한다. Saint Robert, M. J. 2000: 4.

11) Loi no 75-1349 du 31 décembre 1975 relative à l'emploi de la langue française, JO 4 janvier 1976, p. 189 이 법은 1994년 8월 4일 투봉법이 제정되며 폐지되었다.

- 재화와 용역에 관한 상거래 및 광고
- 언론에서의 입찰공고문 작성과 근로 계약에 관한 서면 확인
- 공법인이나 공공 역무를 특허 받은 사인의 재산에 부착되는 모든 게시문
- 지방자치단체나 영조물(營造物) 법인과 체결한 계약
- 라디오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나 안내. 이 경우 명백하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제외한다.

그 외에도 동일한 프랑스어 표기가 존재하는 경우 외국어로 된 단어나 표현을 프랑스어 문장 안에 포함시킬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별도의 번역을 첨부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았다. 이 법에 관한 1977년 3월 14일 시행관련 회람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고 있다.

- 특정 외국어가 이미 통용되고 있고 동일한 프랑스어 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예컨대, 비프스테이크, 샌드위치, 스파게티, 블루진
- 대중에 널리 알려진 외국의 고유 물품이나 특산물의 명칭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쿠스쿠스(couscous), 쇼리쥬(chorizot: 고추를 넣은 소시지), 파엘라(paella) 등
- 국제협정에 의해 프랑스 내에서 보호 받는 parmesan, whisky 같은 외국 명칭은 금지의 대상이 아니다.
- 상표 및 상호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은 몇 가지 강제 수단을 갖추고 있었는데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사기 단속을 위한 1905년 8월 1일 법률 위반 혐의로 소추되고 처벌 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나 영조물 법인의 보조금을 받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강제수단은 충분하지 못했고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 되었다.

이 법의 문제들을 정리해보면, 금지규정을 준수하게 할 정도로 엄격한 제

재수단을 갖추지는 못했으며, 제재조치가 적절하게 적용되지 않았고 쉽게 적용되지도 않았다.

- 1905년 8월 1일 법률상의 사기에 대한 처벌조항을 적용해야 했기 때문에 1975년 바-로리올법은 적용하기에 무척 복잡했고 많은 방해를 받기도 했다.

그리고 관계기관은 법 준수 여부를 감시할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이 법은 상징적이거나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졌다. 법의 적용에 대한 법원의 태도 또한 무척 소극적이었다. 1975년 법에 대한 최소한의 해석에 그치거나, 상표 또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입법을 앞세우거나 바-로리올법이 사기, 허위광고, 안전수칙위반 등 다른 중대한 위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만 개입했다.

한편 “프랑스어 강화”에 관한 시행령은 1972년, 1983년 그리고 1986년에 제정된 바 있다.<sup>12)</sup> 1986년 명령에 따라 중앙 정부 차원에서 각 부(部)의 전문용어 위원회<sup>13)</sup>가 설치되었으며 전문용어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부여받았다.

- 특정 영역에 있어서 사용자의 수요를 고려해, 프랑스어가 결여되어 있는 부문의 목록을 작성하고,
- 시대상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나 신조어를 수집, 제안, 수정하고
- 국외에서 사용하는 프랑스어의 풍요로움을 활용해 용어나 신조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일을 한다.
- 프랑스어 사용자에 대해 새로운 용어를 전파하고 프랑스어의 발전 필요성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

12) décret n° 72-19 du 7 janvier 1972, décret n° 82-243 du 25 mars 1982, décret n° 86-439 du 11 mars 1986.

13) les commissions ministérielles de terminologie

이와 더불어 전문용어 관련 위원회도 설치했는데 이 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전문용어나 신조어에 있어서 프랑스어화(francisation)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검토하며 기존의 부 용어위원회에 의해 검토되지 않은 외국어의 단어나 표현에 관한 목록을 수립한다.
- 특수 단어는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특정 단어나 표현을 규정하고 부 용어위원회가 제안한 단어나 표현이 조화롭게 적용되는지 감독한다.

각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인가된 단어나 표현의 목록은 부령으로 확정된다. 의무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나 표현은 대통령령, 부령, 시행세칙, 훈시, 지침 그리고 국가의 모든 문서에서, 국가기관이 당사자인 계약에 있어서, 국가의 감독을 받거나 그 지원을 받는 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재 및 연구 자료에서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부 용어위원회의 활동의 결과인 450페이지 이상의 프랑스어 공식 용어 사전을 출판하도록 했다.

1989년 6월 2일 명령에 의해 총리 산하에 프랑스어 고등평의회(Conseil supérieur de la langue française)와 프랑스어 총괄국(Délégation générale à la langue française)<sup>14)</sup>가 설치되면서 기존의 관련 기관인, 1984년 2월 9일 명령으로 설치된 프랑스어 자문위원회와 프랑스어청을 대치했다. 고등평의회는 대통령과 정부에 의해 정의된 주요 지침의 범주 내에서 프랑스 국내외에서의 프랑스어의 사용, 개발, 진흥, 전파에 관한 문제 그리고 외국어 정책에 문제 검토를 그 임무로 한다. 총리와 교육, 프랑스어권 장관들이 제기한

14) 2001년 프랑스언어총국(DGLFLF)으로 전환되었으며 문화공보부 소속기관이다. 프랑스 문화공보부에는 다음의 부서들이 있다. 총무행정국(DAC), 건축·문화유산국(DAPA), 문헌국(DAF), 미디어발전국(DDM), 도서·독서국(DLL), 음악·무용·연극·공연국(DMDTS), 박물관국(DMF), 조형예술국(DAP), 국내문화사업국(DDAT), 프랑스언어총국(DGLFLF), 국립영화센터(CNC), 지역문화사업국(DRAC), 지역건축·문화유산국(SDAP), 공공건설공사 수준 제고를 위한 부처간 대표단(MIQCP)  
<http://www.culture.gouv.fr>

질문에 대해 견해를 제시하고 활동 형태를 권고한다. 한편 프랑스어 총괄국은 정책의 결정과 함께 여러 정부부처 활동에 대해 자문을 한다. 그리고 고등평의회가 권고한 활동을 구체화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공사기관의 프랑스어 사용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뤄지는 국제적 차원의 활동으로 프랑스어의 개발, 교육, 전파 사업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 밖에 특정분야에 대한 프랑스어 사용관련 입법들이 있다. 1982년 7월 15일 법률인 인 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기본법<sup>15)</sup>은 제5조에서 “학술 언어로서의 프랑스어 진흥”을 국가정책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방송분야에 있어서 1989년 1월 17일의 방송법은 방송위원회에 “프랑스어와 프랑스문화의 수호 및 선양”을 사명으로 부여했다.

1977년과 1982년 바-로리올법의 강화를 위해 많은 시행령이 발표되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1990년에서 1994년까지 소비자단체와 프랑스어 수호협회들이 제기한 5천 834건의 소송 가운데 44건만이 법원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을 뿐이다.<sup>16)</sup>

## 2.2. 프랑스어의 헌법적 수용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유럽연합 내에서 경제 및 화폐 통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유럽시민에게 시의회 선거와 유럽의회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인정을 주 내용으로 하며 체결당사국 내에서 그 승인과 관련, 많은 문제를 제기했다. 프랑스의 경우 이 조약은 위헌 심사에 회부되어 “국민주권행사의 본질적 조건을 해하는” 조약으로 이의 비준에 대한 동의는 헌법 개정을 요한다는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의 판결을 받았다.<sup>17)</sup> 결국 이 조약을 승인하기 위해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15) La loi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pour la recherche et le développement technologique du 15 juillet 1982.

16) Hagège, C. 1996: 149-150.

17)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승인을 받기 위해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했던 부분은 국민주권행사의 조건에 관한 것이었다. Saint Robert, M. J. 2000: 81-85.

이 과정에서 관련 조약에 관한 위헌 심사와는 무관하게 “공화국의 언어는 프랑스어이다”라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 조항은 처음 정부가 제출했던 헌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프랑스어에 대한 헌법적 논의가 있었던 것은 하원 제1독회에서였다.

하원은 헌법 제2조 제1항 이후에 “프랑스어는 공화국의 언어이다”라는 제2항을 신설하자는 수정 동의안을 채택했다. 상원은 제1독회에서 이를 “공화국의 언어는 프랑스어다”로 수정했다. 이는 프랑스어가 프랑스만의 독점물이 아니며 다른 국가의 언어이기도 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아무튼 프랑스어에 관한 헌법 조항의 신설은 공동체 내에서의 자유로운 왕래로 인해 프랑스의 공적 활동에 있어서 점진적인 외국어 사용 상황이 초래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기도 했다.

### 2.3. 위헌 심사

이 같은 헌법 조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 “프랑스어 사용관련법”이다. 이 법률은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의무와 제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관련 법률들이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았던 영역에까지 그 적용을 확대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이 법률안이 의회를 통과하자마자 하원 의원 60인이 청구인이 되어 위헌법률 심사에 회부했다. 즉 청구인은 이 법률의 일정조항(제2, 3, 4, 6, 712, 1314 및 17조)이 헌법상의 사상,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 영업의 자유 및 교육의 자유에 관한 원칙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형벌에 있어서 평등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기본권 보장에 관한 원칙의 수립은 의회입법 사항 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에 위임함으로써 의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또한 헌법 제40조(의원에 의해 제출된 법률안 또는 수정안은 그것이 공공재원의 감소나 공적 부담의 창출 또는 가중되는 경우 안으로 채택될 수 없다)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 가. 인권선언 11조에 의한 한계

헌법재판소는 인권선언 제11조<sup>18)</sup>상의 사상 의견의 자유로운 발표의 원칙이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원칙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인정한 바 있고 본 건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판결문 제5문에서(5e considérant) 사상의견의 발표 및 표현의 자유는 “그 행사에 의해 여타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 및 국민주권에 대한 존중이 본질적으로 보장될 정도로 소중한 기본적 자유로, 법률은 이 자유를 보다 더 실효성 있게 하거나 여타 헌법상의 원칙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경우에만 규제할 수 있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판결문 제6문에서 “이 자유에는 각자가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기에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헌법재판소는 특히 교육 및 연구 분야에 있어서 프랑스어 사용강제와 관련, 교육의 자율성 침해보다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그 위헌성을 확인했다. 판결문 제24문에서는 당해 법률 제7조 2항이 교육 및 연구에 있어서의 공적 지원을 관계 장관이 인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교육자 및 연구자가 그 결과를 프랑스어로 발간하고 배포할 것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은 특히 교육 및 연구에 있어서 표현 및 발표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 예외조항 또한 과학적, 교육적 이익에 관한 어떠한 평가 기준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이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며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 나. 인권선언 제11조와 헌법 제2조2항과의 조화

헌법재판소는 프랑스어 사용관련법이 인권선언 제11조상의 표현 및 발표

18) Tout citoyen peut parler, écrire, imprimer librement sauf à répondre de l'abus de cette liberté dans les cas déterminés par la loi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전달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의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발언하고 저술하고 인쇄할 수 있다. 다만 법률로써 규정된 경우에는 그 자유의 남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인권선언논쟁(人權宣言論爭)』, G. 엘리네크·E. 부뜨미, 김효전 역 법문사(1991) p. 205.

의 자유에 저촉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과 동시에 헌법 개정으로 신설된 헌법 제2조2항의 헌법적 의미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할 기회를 가졌다. 판결문 제6문에서 “공화국의 언어는 프랑스어”라는 것이 하나의 헌법상의 원칙임을 확인하고 “인권 선언 제11조에 선포된 발표 및 표현의 자유와 관련 조문 사이에 필요한 조화conciliation nécessaire를 이루는 것은 입법자에게 맡겨져 있다”고 했다. 그리고 필요한 조화의 기준으로 공무service public의 수행여부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을 제시하고 있다. 즉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공법인이든 사인(私人)이든 공용어(公用語)의 의무적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데 비해(판결문 제8문) 그 외의 사인(私人)에 대해서는 징계를 전제로, 공식적인 용어 형태로 규정된 특정단어나 표현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인권 선언 제11조를 무시하는 것(판결문 제10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업무와 그 기관에 대해서는 그 성격의 공사를 불문하고 이 같은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했다.

## 2.4. 프랑스어 사용관련법의 주요내용

이 법 제1조는 프랑스어 사용원칙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프랑스어는 프랑스의 정체성 및 유산의 기본 요소이다. 둘째 프랑스어는 교육, 노동, 교역 및 행정의 언어이다. 셋째 프랑스어는 프랑스어 사용 국가들 간의 최적의 연결고리이다.<sup>19)</sup>

19) 프랑스어 사용관련법을 참고해 제정한 국어기본법 시행령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5년 7월 28일 시행)

- 국어 사용실태조사(안 제2조)
- 국어책임관의 지정(안 제3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국어책임관을 둘 수 있음.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1)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 보급과 정확한 문장 사용 장려 (2)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환경 개선 (3) 해당 기관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
- 어문규범의 영향평가(안 제4조)
- 공문서의 작성(안 제11조)
- 전문용어의 표준화, 체계화(안 제12조)

가. 재화 및 용역에 대한 프랑스어 사용의무

1994년 법률 제2조에 의하면 이 같은 의무는 표시, 공급, 전시, 사용설명, 보증서, 영수증, 각종 광고에 적용된다.<sup>20)</sup>

나. 일반인에 대한 안내, 설명 및 공도(公道), 공공장소 대중교통에서의 안내, 설명에 프랑스어 사용의무

3조에 따르면 일반인에게 공개된 재산의 경우 그 소유주가 공법인, 사인을 불문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공개된 장소의 개념은 폭넓게 해석되어 레스토랑이나 카페, 극장이나 영화관, 상점, 박물관 등을 포함하며 특히 지금까지 언어에 관한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기업 소유의 장소까지 그 적용대상으로 했다.

항공승객에 대한 입국 안내방송이나 대형 상가에서의 광고 안내 방송 등의 경우에도 적용되며 만일 이 같은 광고가 공법인 혹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에 의해 행해질 경우 반드시 2개 이상의 언어로 하도록 했다.(4조)

다. 공법인 혹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에서(5조)

이 같은 계약에서는 동일 개념의 프랑스어가 존재하는 한 외국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프랑스 국외에서 이행되는 상공업 활동을 하는 공법인이 체결하는 계약은 제외된다. 그리고 이 같은 계약이 외국인과 체결될 때는 프랑스어 외에 하나 혹은 다수의 언어로 작성될 수 있다.

라. 프랑스인에 의해 프랑스 내에서 개최되는 행사, 세미나, 학회에서 프랑스어로 표현할 권리(6조)

회합 전이나 회합 중에 참가자에게 진행 순서를 알리기 위해 배포되는 자

- 
- 국어 보급(안 제13조, 제14조)
  - 한글날 기념행사(안 제15조)
  -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안 제16조, 제17조)

20) 이에 대해 피에르 앙크르베 P. Encrevé는 폭격기의 공격을 예상하지 못하고 전차방어 기지만 구축한 마지노선에 비유했다. 1994년 의원들은 원격통신, 인터넷, 영화 그리고 음악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P. Encrevé 2007: 119-132.

료는 프랑스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여러 언어로 번역될 수 있다. 외국어를 포함한 자료를 배포하거나 발간하는 경우에는 프랑스어 요약문을 첨부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는 외국인에게 적용 되지는 않으며 국외에서 교역 증진에 관한 행사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법인이나 사법인에 의해 주도되는 행사의 경우 번역물이 수반되어야 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출판물, 정기간행물, 소식지 등을 프랑스 국내에 배포하는 경우 그 주체가 공법인이거나 공무를 수행하는 사법인이거나 공적 보조금 지원을 받는 경우 프랑스어 요약문이 첨부되어야 한다.<sup>21)</sup>

마. 공사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각종 시험, 논문 보고서

프랑스어를 교육언어로 사용해야 하지만 몇 가지 예외를 둔다. 지역 또는 외국의 문화에 대한 교육, 외국인 객원 또는 초빙교수, 외국학교 또는 외국인을 위한 학교나 국제적 성격의 교육을 하는 학교<sup>22)</sup>

프랑스어 사용관련법에 대한 상원에서의 설명에서는 “젊은 세대에게는 외국어가 더 이상 성공의 수단이 아니라 이미 하나의 필수조건이 되었고 프랑스에서는 젊은이들에게 두 개의 외국어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또한 11조에서 “프랑스어에 대한 숙달과 2개 언어에 대한 지식은 교육의 기본목표이다”라고 하며 1989년 7월 10일의 교육기본법에 한 조항을 추가한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제안 설명에 따르면 프랑스 국내에서 교육 언어로 프랑스어를 강제하는 것은 외국어의 남용, 학생들이

21) 여기에 대해서도 앙크르베는 가장 큰 문제가 프랑스어와 외국어 특히 영어와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영어 외에도 paparazzi, tifosi, shoah, shalom, aliah, intifada, taliban 처럼 “동등한 프랑스어 표현이 있는” 흔히 쓰이는 외국어 표현들이 많으며 이것도 역시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Encrevè, P. 2007: 136.

22) 이 법을 발의한 자크 투봉 당시 문화부 장관은 궁극적으로 이법의 목표가 유럽의 모든 어린이들이 3, 4개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agège, C. 1996: 157.

이해 못 할 일방적인 외국어교육 등을 억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한다.

바. 노동법 적용 관련

근로계약은 프랑스로 작성되어야 한다. 계약과 관련해 동일한 의미의 프랑수가 없을 경우에만 외국어로 작성될 수 있지만, 계약서에는 해당 외국어에 대한 프랑스어 설명이 요구된다. 근로자가 외국인일 경우 자신의 모국어로 계약서의 번역을 요구할 수 있다. 양자가 불일치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된 계약서만이 그에게 원용될 수 있다. 근로규칙은 프랑스로 작성되어야 한다. 근로자를 위하거나 근로제공의 의무에 관해서도 프랑스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 작성이 병행될 수 있다. 단체협약은 프랑스로 작성되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조문은 노동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사. 방송과 광고에서

프랑수를 방송의 기본 언어로 강제하지만 일정한 경우 그 예외를 인정한다.

- 원어 영화 및 시청각 자료
- 문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외국어로 된 음악작품
- 외국어로 배포되도록 되어 있는 위성 통신 방송이나 외국인 대상 방송 또는 특정 언어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 문화 행사의 중계방송

광고 내용이 외국어로 번역될 경우에도 프랑수가 외국어 설명과 마찬가지로 보이고 청취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법을 보충해 방송위원회로 하여금 프랑수의 존중 및 프랑수어권에 대한 파급을 감시하도록 그 권한을 강화했다.

#### 아. 제재 수단의 강화

과거 입법에 비해 제재 수단이 강화되었다. 우선 범칙금의 액수를 늘려 개인에게는 5천 프랑, 법인에게는 2만5천 프랑까지 부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위반 건수에 따라 범칙금의 액수를 배가 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이전 소비자 보호법에만 의거하던 것에 비해 강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지자체와 영조물 법인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자는 이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라는 제재를 받게 했다.(15조)

### 3. 제기되는 문제들

#### 3.1. 언어 환경의 변화

프랑스어의 언어정책은 투봉법의 적용, 프랑스 국내외에서의 프랑스어 교육, 프랑스어권 기관과 지역자치단체 등의 활동으로 평가된다.<sup>23)</sup> 1994년에 통과된 이 법은, 거세게 불어 닦힌 세계화의 열풍으로 영어만 사용하는 것이 편하다는 데 공사(公私)기업이 뜻을 모았던 것이 제정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sup>24)</sup>

헌법재판소는 시청각 관련 기업이나 과학 연구 부문에 있어서 국어에

23) 프랑스의 자국 언어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문헌을 찾기는 어려운 일이다. 여기서는 2005년 6월 발표된 Hubert Astier 문화행정 총감독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한다.

24) 프랑스어는 국가의 정체성에 있어서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SOFRES가 1994년 3월 4일과 5일 실시한 조사결과, 97%의 프랑스인은 모국어에 밀착되어 있다고 느끼며, 70%의 응답자는 프랑스어의 보급과 확산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답했다. 언어가 정부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도 다수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39%의 응답자는 프랑스어의 수호에 있어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51%는 이 같은 정책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모국어에 대한 집착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언어정책의 수행은 좌·우파의 집권여부에 상관없이 프랑스에서 정당성을 확보해 왔다. Echos 1994 oct. 38-61.

대한 압력이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로 일부 약화시킨 바 있다. 그리고 정부의 통제에 있어서 상표와 법인의 명칭에 대한 모든 시행령을 배제시키기도 했다.

법 시행의 성과로는 광고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제를 들 수 있는데 CSA (시청각고등심의회, le 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는 전문 기관인 BVP(Bureau de vérification de la publicité 광고통제국)의 역할에 힘입어 영어로만 광고하는 것을 어느 정도 저지할 수 있었다. CSA는 1989년 1월 17일 설치된 시청각 부문에 대한 독립행정기관으로, 프랑스 국내 또는 위성으로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의 제작자들이 법을 준수하게 하며 공공 채널의 책임자를 지명하고 편중되지 않은 운영을 하게 하며 TV와 라디오의 방송을 허가하고, 시청각 관련 법률안에 의견을 제시하며, 정치적 다원주의를 준수하게 하고 정보의 진정성을 유지하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라디오 방송에서 프랑스 상송의 방송 비율과 프랑스 및 유럽 영화의 비율을 유지하도록 한다.

그러나 제한된 지위만을 갖고 있는 BVP로는 게시물을 통제하는 것이 어렵다.<sup>25)</sup> 영화 제목이나 이에 대한 광고는 대개 프랑스어로 작성되지만 간혹 미국식으로 쓰인 것이 더 젊고 신세대적인(branché) 분위기를 내는 것으로 관객을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목들에서 이 현상은 두드러진다. *loft story*, *star academy*, *the bachelor*, *fear factor* 항상 더 유행을 반영하고 젊은 시청자를 이끌 수 있다는 제작자와 투자자들이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투봉법의 강제 조항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라 삭제된 분야이다.

국제적 기업들은 그들의 고객이 중국인, 러시아인 등이 되기 때문에 신입 사원은 최소한의 영어구사를 입사 조건으로 하고 있는 형편이다. 국제 기업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노조단체 CFDT와 CGT가 나서곤 하지만 계속된

25) 클로드 아제주는 특히 의류판매업 분야에서 유사 영어 사용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Mc Gregor, K-Way, Weston Hagège, C. 1996: 155.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영어는 다음 네 개의 분야에서 요구되고 있다.

- 금융권은 첨단 분야 어휘에 대해 다른 어느 분야보다 더 큰 집착을 보이고 있다. 금융기관은 “집단적”이며 “입문” 자료에 대해 영어 사용을 선호한다. 물론 고객들은 법률관련 자료를 프랑스어로 확보할 수는 있다.
-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미래와 관련된, 정보통신 관련 분야로 가장 많은 주민이 의사소통에 있어서 신기술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sup>26)</sup>

컴퓨터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의 제공자들은 소비자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프랑스어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투봉법의 제2조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 분야에서는 법의 적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프랑스에서 사용 가능한 외국 인터넷 사이트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 관해서 이탈리아는 원격 계약의 경우 이탈리아어 번역을 첨부하게 하는 법을 통과 시켰다. 국사원(Conseil d’Etat) 등 국가기관들도 외국 사이트에 관한 법률 제정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 분명한 답은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과학 연구소의 경우 대부분 영어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대외 소통을 위해 사용될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더욱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다수의 저널이 영어로 발간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연구소의 연구원이나 정부의 지원을 받는 부문의 연구보고서는 프랑스어로 쓰게 하자는 법률안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부결된 바 있다.

26) 2004년 1월 필립 마리니 Marini 상원의원(여당인 대중운동연합당UMP 소속)은 투봉법에서 프랑스의 대등을 상대로 하는 전자상거래와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우선, 에리 메시지의 경우 자동적으로 프랑스어로 쓰이게 하겠다고 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에 서버를 두고 프랑스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광고이다. 그의 투봉법 보완 제안에 대해 의회는 만장일치로 뜻을 모았지만, 여러 차례의 공청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분야에 있어서 현재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 상호명이나 상표명이 영어로 된 광고가 점점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책이 없다.
- 국제적인 여론에 호소할 수 있는 전략의 부재는 아쉬운 대목이다. 정치적 성향의 프랑수어권 단체인 국제프랑수어권기구(OIF: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la francophonie)와 재정중심의 프랑수어권정부간 협력사무소(AIF: Agence intergouvernementale de la Francophonie)간의 조율은 아직 불충분하며 다른 기구들과의 양자 간 혹은 다자간 협력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상호적 재원확보의 부족을 이유로 들 수 있다. 2억6천만 유로의 예산 가운데 프랑스가 1억 5천만 유로를 부담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절반은 TV5를 위한 것이다. 국가 예산의 3%를 유럽연합에 쓰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수어권을 위해서는 0.07%를 쓰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프랑수어권 기구들의 활동은 프랑수어의 수호가 아니라 다언어, 다문화주의의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요약되고 있다.

문화부, 외교부, 교육, 노동 등 각 분야 간의 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지적되고 있다.<sup>27)</sup> 가장 최근의 예로는 독일에서 독일어 교육에 대한 노력을 설명하며 교육부는 대통령이 참석한 자리에서 전체를 영어로 설명한 적도 있다.

프랑수어의 사용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등과의 갈등에 따라 특히 외국에서 많이 위축되었고 국내에서도 문맹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업과 과학 연구 분야에서는 영어 사용 비율이 높아지며 특히 젊은이들 간에는 영어사용이 젊고 신세대(branché)로 보인다며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고전 영어와 다른 간략해진 영어의 효율성이 세계화 시대와 맞물리는 점도 있지만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세계화 시대의 신 엘리트로 보이려고 하며 언론은 american way of life, fear factor, radio city 등의 말을 쏟아내고 있

---

27) 이미 지난 1985년 파리 외곽에 건설된 유로 디즈니랜드에 많은 영어 사용이 예견되어 당시 프랑수어총괄 사무국이 강력한 반응을 보였지만 총리실은 경제논리를 앞세워 그대로 사업을 하게 해 Disney resort, Disneyland-Paris, Fantasy land, Discovery land, Main Street 등이 그대로 사용되게 했다. Saint-Robert, M. J. 2000: 11.

다.<sup>28)</sup> 이런 상황에서 전반적인 몇몇 전문용어를 프랑스어로 대체하거나 특정 상황에서의 프랑스어 사용을 주장하는 정책만으로는 힘겨워 보인다.

### 3.2. 유럽연합과의 갈등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프랑스 정부에 2002년 7월 25일자 시정요구를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행 프랑스 국내법은 프랑스에 수입되는 모든 식품 라벨이 프랑스어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식품 라벨에 특정언어를 강요하면서, 구매자가 쉽게 이해하는 다른 언어 또는 구매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수단을 허용하지 않는 국내 법규는 사법재판소의 2000년 9월 12일자 판결, 유럽연합 조약, 지침 2000/13에 위배된다.
3. 지침 2000/13에 따르면, 예를 들어 닭날개가 들어있는 종이상자에 분명한 닭날개 사진이 있으면 ‘chicken wings’라는 표기만으로도 프랑스에서 판매할 수 있다.
4. 프랑스 국내법을 사법재판소 판결에 부합하게 개정하길 요구한다.

이처럼 재화의 역내 자유이동을 위해 의사소통 자유의 폭도 넓히려는 유럽연합의 의사와 프랑스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국어 수호는 상충될 수

---

28) 파리 근교 이블린 Yvelines에 자리 잡은 미국회사 GEMS(General Electric Medical system)은 신입사원 채용을 “월어민 수준의 영어 구사자”로 하고 1998년 이후 사내 모든 문서를 영어로 사용했다. 이에 대해 이 회사 노조와 프랑스어 수호단체들은 2005년 9월 투봉법 위반으로 관할 법원에 제소해 2006년 1월 승소해 무거운 벌금과 함께 모든 문서와 소프트웨어의 프랑스어 번역을 실시하게 했으며, 회사 측의 공개사과도 받아냈다.

외국계 기업을 상대로 한 흔치 않은 성공 사례다. [http://www.mcf.qc.ca/affaire\\_gems\\_suite.htm](http://www.mcf.qc.ca/affaire_gems_suite.htm) 이 사건은 지금까지 프랑스어에 대해서는 우파 엘리트그룹이 독점적으로 주도하던 것에서 좌파 노조와 함께 하게 된 상징적 사건으로 간주된다.

밖에 없다.

### 3.3. 시민단체를 통한 활동의 문제

1997년 6월 9일 파리 경찰 법원<sup>29)</sup>은 프랑스어 수호를 위한 2개의 단체 “프랑스어 수호”(Défense de la langue française), “프랑스어의 미래”(Avenir de la langue française)가 이른바 투봉법, 프랑스어 사용관련법 위반 혐의로 제소한 사건에 대해 기각했다. 투봉법 2조에 따르면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서면 음성 그리고 시청각 광고는 프랑스어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조지아 테크 로렌(Georgia Tech Lorraine)은 미국 애플랜타 소재 조지아 공대의 유럽 분교로 이 학교의 웹 사이트는 교육내용 교과과정과 등록 조건 등을 영어로만 제공했다. 파리 경찰 법원은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이 협회들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인터넷에 대한 투봉법의 적용 문제에 대해 명확한 판결을 내리지는 못했다. 이후에도 프랑스어 수호 단체<sup>30)</sup>들은 계속 소송의 주역이 되고 있다.

이들이 보기에 프랑스어는 분명 위기에 처해있다. 새로운 단어가 가장 전통적인 단어들을 내쫓고, 단어의 의미가 변질되고 어떤 것은 차용어로 대치되고 과장법과 완곡어법이 현대어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프랑스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 모든 부적절한 표현을 추방하자고 제안한다. 프랑스어수호단체들이 투봉법의 준수를 목적으로 하는 자신들의 주요 활동 가운데 하나로 내세우는 것이 바로 “카페트 앙글레즈”<sup>31)</sup>이다. 카페트 앙글

29) tribunal de police. 중범죄를 다루는 tribunal correctionnel에 비해 가벼운 죄질의 범죄를 처리하는 법원으로 지방법원 내에 위치하고 있다.

30) 프랑스어 수호단체는 전국적으로 약 300개 있으나 투봉법에 근거해 프랑스 문화공보부의 지원을 받는 단체는 다음의 3곳이다. “프랑스어 수호”(DLF : La Défense de la langue française), “프랑스어의 미래”(ALF: L’Avenir de la langue française), “프랑스어권의 우정과 연대”(AFAL : L’Association francophone d’amitié et de liaison) 소송 등 대외활동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ALF와 DLF는 “이해할 권리”(Le Droit de comprendre)라는 또 다른 단체를 만들었다.

31) 여기서는 “양탄자”라는 뜻보다 “아부, 굴종”이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레즈 아카데미 L'Académie de la Carpette anglaise는 매년 시민 불명예상 «indignité civique» 대상자를 프랑스의 엘리트 가운데 프랑스 국내에서 영어의 지배적 위상 제고에 기여하며 국제기구에서 프랑스어의 위상 하락에 기여한 사람 가운데에서 선정 한다. 회원 가운데에는 아카데미 프랑세즈 회원과 문인, 정치인 등이 있으며 ASSELAF<sup>32)</sup> 회장인 필립 드 생 로베르 Philippe de Saint-Robert가 카페트 앙글레즈 아카데미를 주재하고 있다. 이 상은 지난 1999년 프랑스어의 “수호와 장려”를 위한 아래 네 단체에 의해 설립되었다.

프랑스어의 미래(Avenir de la langue française)

프랑스어 보호와 확산(Association pour la sauvegarde et l'expansion de la langue française: ASSELAF)

프랑스어의 수호(Défense de la langue française: DLF),

이해할 권리 (Droit de Comprendre: DDC).

아카데미에 따르면 이 상은 “특히 프랑스어에 해를 끼치고 공민정신의 결여를 나타낸 자로 세계화된 재정적 힘 앞에 무력하게 굴복해 국가 정체성을 약화시킨 자”를 수상자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상은 “단순한 소비니즘의 표현이 아니라 영어의 부상에 대한 견제 세력(contre-pouvoir)으로 프랑스어를 장려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위해 유럽 연합에서의 사용을 제고하려는 노력”이라고 존재 의의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2001년부터는 심사위원 특별상이 제정되었고 이 상은 어 유럽이나 국제기구의 주요인사 가운데 영어의 확산과 보급에 기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이 언어수호라는 당초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으며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고 있다.

32) L'Association pour la sauvegarde et l'expansion de la langue française

#### 4. 맺음말

언어관련 입법과 그 시행은 반드시 ‘표현의 자유’라는 문제와 충돌하게 되어 있다.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그 성과도 큰 것으로 알려진 캐나다 퀘벡의 101호법(프랑스어 헌장)은 1977년 제정 이후 무려 200번 이상의 수정을 거쳐 오고 있다.

투봉법을 중심으로 한 현행 프랑스 언어정책에 관해 프랑스의 두 언어학자 루이 장 칼베 Calvet와 클로드 아제쥬 Hagège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어의 역사를 투쟁의 역사로 파악하고 있으며 투봉법의 제정에도 직접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클로드 아제쥬는 더욱 강력하고 효율적인 법의 제정과 그에 따른 집행으로 프랑스어의 운명을 지켜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루이 장 칼베는 기본적으로 투봉법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언어정책은 “금지하고, 감시하며 처벌하는 것”이라고 한다(*interdire, surveiller et punir*). 그리고 이 법의 어느 곳에서도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 법이 영어에 대한 것이란 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 그리고 법과 시행령이 언어의 어휘 부문에 지나치게 치우쳐있다는 것도 지적하고 있다. 필자는 두 사람의 의견 가운데 칼베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이다. 이외에도 극우성향의 폴 마리 쿠토 Couteaux 같은 사람들은 “언어주권” *souveraineté linguistique*이란 말도 사용하며 더욱 강경한 자세를 요청한다.

하지만 피에르 앙크르베 Encrevé는 투봉법을 ‘마지노선’에 비유하고 있다. 마지노선은 전차의 공격만을 염두에 두었을 뿐 폭격기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1994년 의원들은 인터넷, 영화, 음악은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제소하며 패소한 사건들로부터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인터넷과 정보통신 분야에서 법적인 제어는 한계가 있으며 또 그 제소의 주체가 관련 당국이 아니라 시민단체인 점을 감안하면 그 효과에도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프랑스는 영어에 대해서는 다언어주의를 주장하면서도 국내 소수 언어에 대해서는 헌법 2조 “공화국의 언어는 프랑스어다”를 들어 유럽 소수

언어 보호를 위한 현장 조인도 거부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그리고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표현의 자유’가 역내 시장 내에서의 자유 이동과 더불어 유럽 연합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강제적인 제어가 계속 통할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프랑스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프랑스어 수호” 관련 기관들이 펼쳐진 주장들은 하나같이 동결과 과거에의 회귀라는 내용의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문화 국가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려는 프랑스는 보다 유연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거론한 GEMS사건에서 보여주듯이 언어문제는 이제 더 이상 애국심이나 특정집단에 대한 충성심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편리함이나 필요에 따라 이끌리게 되어있다. 다른 프랑스어문화권에서도 언어 문제는 이제 보건, 의료 등의 생활을 위해 자신의 모국어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프랑스어사용관련법의 시행은 외국에서 온 이주민의 사회통합과 유럽통합에 따른 역내 교역 확대를 대비한 교육문제로 힘이 모여질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2005년 제정되고 시행령까지 공포되었지만 아직 일반인들에게 생소하기만 한 국어기본법의 시행에 이 언어정책 연구가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진수(2000), “프랑스의 언어정책에 대하여”, 『프랑스어문교육』 제9집.
- \_\_\_\_\_ (2000), “프랑스어 사용관련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 『한국프랑스학논집』 제31집.
- \_\_\_\_\_ (2001), “프랑스어 사용관련법”, 『프랑스어문교육』 제11집.
- \_\_\_\_\_ (2001), “프랑스어의 역사”, 『악의 꽃에서 샤넬 No5까지』, 한길사.
- \_\_\_\_\_ (2003), “프랑스의 식민지 언어정책”,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8집.
- \_\_\_\_\_ (2005), “프랑스 문화공보부 연구(I)”, 『EU연구』 제16호, 2005.
- \_\_\_\_\_ (2006), “퀘벡의 101호법 제정과 언어풍경의 변화”, 『프랑스학연구』 제35집.
- \_\_\_\_\_ (2007), “프랑스 언어정책의 특징과 한계”, 『불어문화권연구』 제17집.
- 김현권(2003), “프랑스의 모국어 보호정책과 법제”, 『새국어생활』 제13권 2호.
- 송기형(1998), “인터넷을 통한 프랑스의 언어정책연구”, 『한국프랑스학논집』 제25집.
- \_\_\_\_\_ (1999), “프랑스의 언어정책과 불어사용법”, 『한국프랑스학논집』 제27집, 1999.
- 심을식(2002), “프랑스의 언어정책”, 『한국프랑스학논집』 제38집.
- 안영훈(1998), 『프랑스의 정부조직』,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장소원(1998), “프랑스의 언어정책”, 『세계의 언어정책』, 서울: 태학사.
- 정시호(2000), 『21세기의 세계 언어전쟁』, 경북대학교 출판부.
- 한선혜(2002), 「자국어 능력 배양을 위한 프랑스의 노력」 『새국어생활』 제12권 2호.
- AIF(2004), *Le français dans le monde*, No 333, Paris: CLE International.
- Albert, C.(1999), *Francophonie et identités culturelles*, Karthala.
- Arnaud S. et al.(2002), *Les défis de la francophonie. Pour une mondialisation humaine*, Paris: Alparès.

- Benhamou F.(2000), *L'économie de la culture*, Paris: La Découverte.
- Bogaards, P.(2008), *On ne parle pas français*, Bruxelles: De Boeck.
- Calvet, L-J.(1974), *Linguistique et colonialisme*, Paris: Payot.
- \_\_\_\_\_ (1987), *La guerre des langues*, Paris: Payot.
- \_\_\_\_\_ (1996), *Les politiques linguistiques*, Paris: PUF.
- \_\_\_\_\_ (1999), *Pour une écologie des langues du monde*, Plon.
- Calvet, L. J. et al.(2005), *Impérialismes linguistiques hier et aujourd'hui*, Paris: INALCO.
- Canut C. et al.(2001), *Comment les langues se mélangent*, L'Harmattan.
- Caubet, D. et al.(2002), *Codification des langues de France*, L'Harmattan.
- CNFPT(1991), *Institutions et vie publique en France*, La documentation française.
- \_\_\_\_\_ (2000), *Droit administratif et administration*, La documentation française.
- Decaux, A.(2005), *Etats généraux des Francophones*, Paris: Société des gens de Lettres, 2005.
- DLF(2006), *Défense de la langue française*, No 217~224, Paris: DLF, 2006
- Duverger, M., 『프랑스헌법과 정치사상』, 문광삼·김수현 옮김, 부산: 도서출판 해성 *Les constitutions de la France*, 14e édition, P.U.F, 2003.
- DGLFLF(1996-2007), *Rapport au Parlement*, Paris: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 Durand, Ch.(1997), *La langue française: atout ou obstacle*, Toulouse: Presses Univ. Mirail.
- Encrevé, P. et al.(2007), *Conversation sur la langue française*, Paris: Gallimard.
- Giusti, A.(1997), *La langue française*, Paris: Flammarion.
- Gunten B.(2003), *Les institutions de la France*, Paris, Natnan.
- Hagège, C.(1987), *Le français et les siècles*, Paris: Odile Jacob.
- \_\_\_\_\_ (1992), *Le souffle de la langue*, Paris, Odile Jacob.
- \_\_\_\_\_ (1996), *Le Français, Histoire d'un combat*, Paris: Ed. Michel.
- \_\_\_\_\_ (2000), *Halte à la mort des langues*, Paris: Editions Odile Jacob.
- Kersaudy, G.(2001), *Langues sans frontières*, Paris: Autrement.
- OECD(1996), *Examens des politiques nationales d'éducation*, Paris.

Saint Robert, M. J.(2000), *La politique de la langue française*, Paris: PUF *Quar sais-je?* No 3572.

## 관련 인터넷 사이트

프랑스언어총국(DGLFLF)

<http://www.culture.fr/culture/dglf>

프랑스어 수호협회 “프랑스어의 미래”(Avenir de la langue française)

<http://www.avenirlanguefrancaise.org>

“프랑스어 수호”(Défense de la langue française)

<http://www.langue-francaise.org>

“프랑스어권의 우정과 연대”(Association francophone d’amitié et de liaison)

<http://www.association-afal.org>

캐나다 라발대학교 세계 언어정책

<http://www.tlfq.ulaval.ca/axl/>

원고 접수일: 2009년 9월 26일

심사 완료일: 2009년 11월 13일

계재 확정일: 2009년 11월 30일

RESUME

---

## L'application de la loi Toubon, le bilan et la perspective

Kim, Jin-Soo

En vertu de l'article 2 de la Constitution, «la langue de la République est le français». Il appartient alors au législateur d'intervenir pour réglementer l'usage de la langue française. Cette loi de 1975 a été remplacée par la loi Toubon, du 4 août 1994. En fait, la loi de 1975 s'étant révélée insuffisante, il était devenu indispensable de l'adapter afin d'en rendre les dispositions plus efficaces. C'est l'objet de la loi Toubon. L'objectif du législateur est double: protéger simultanément la langue française et le citoyen/consommateur. L'article 1er de la loi, indique ainsi que «langue de la République en vertu de la Constitution, la langue française est un élément fondamental de la personnalité et du patrimoine de la France». C'est donc à sa protection que vise le texte. Et l'alinéa 2 poursuit en ajoutant qu' «elle est la langue de l'enseignement, du travail, des échanges et des services publics». Le champ d'application est ainsi large, il vise à permettre l'usage du français dans les actes quotidiens. C'est dans les domaines économique et commercial que les risques d'atteinte sont les plus nombreux.

L'Internet pose alors une difficulté supplémentaire, en particulier concernant l'applicabilité de la loi Toubon sur des sites étrangers. Certains

auteurs ont proposé d'utiliser le critère du public cible qui devrait être retenu, et favoriserait ainsi la protection du consommateur.

S'il est vrai que la mise en œuvre de la loi Toubon a connu l'obstacle d'une censure par le Conseil constitutionnel et est aujourd'hui toujours confrontée au problème de sa conformité au droit communautaire, il n'en demeure pas moins qu'il s'agit d'une loi qui fait autorité et qui est bien respectée. Dans le domaine de la publicité, les deux objectifs de défense de la langue française et de protection du consommateur sont remplis, mais des aménagements sont souhaitables, prioritairement pour étendre son application à la publicité par voie électronique. Se posera alors la question de l'applicabilité de ces dispositions et les difficultés liées à l'internationalité d'Internet.